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24 |
|----------|------|

발의연월일 : 2024. 7. 17.

발 의 자 : 서왕진 · 조 국 · 이해민
김재원 · 황운하 · 강경숙
김준형 · 김우영 · 차규근
신장식 · 박은정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자동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조의4(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3조의3(자동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u></p> |
| <p><u><신 설></u></p> | <p><u>제3조의4(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u></p> |

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